Vol. 275 2017.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순간

FOCUS

2월, 새로운 시작… "날아라 청춘"

SPECIAL REPORT

손보發 '초대형 점포' 태풍… "지점 통폐합 ➡ 초대형化"
개인영업채널 "성장 브레이크" … GA채널 "러브콜 전쟁"
미국인 'Roger Peacock' 아저씨에게 보험이란? "친구"
비과세 막차 '月적립식보험' … 3월내 가입땐 "평생 무한절세"
올해, 3大 생보트렌드… "저해지환급 · 간편심사 · 헬스케어"
대법원 "합산 지급하라" … 파생장해, 지급관행 뒤집혀
"無자격 '바지 설계사' 난무" … '보험설계사 통합조회시스템' 절실
늙고 가난한 게 죄인가요?… "빈곤노인, 학대 재발 가능성 2배⬆"
"朴-崔게이트" 보험업계 불똥…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올스톱
'리딩 컴퍼니'의 두얼굴… 삼성생명發 '공포마케팅' 충격
치솟는 보험료… 보장에 강한 "GI · DIY 보험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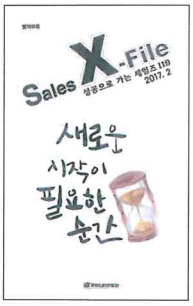

02
9 771599 007008
ISSN 1599-0079

산재보험금 내 '자기신체사고보험'… "보험금 공제 불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대법원 판결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 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원고(甲)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순수한 상해보험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 이에 대해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

원 1991. 7. 23. 선고 90다 11776 판결 참조).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따라서 삼성화재는 사용자인 소외인과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다. 즉 사용자인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제1심 판결 유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 판단했다.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 더불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례평석]

위 대법원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은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및 조정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이다. 또한 각종 보험금 사이의 공제 여부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정당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상해보험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상해보험은 손해배상이나 산재보험급여와는 기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즉 상해보험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중이득금지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도 타당하다.

본래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9. 7.선고 2000다21833 판결).

이는 성질이 다른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손해배상과의 공제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에도 반하는 잘못된 판결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양자의 관계를 제대로 판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법리가 다른 보험에도 적용될지 기대가 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로 판시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InS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